

HANYANG UNIVERSITY

2022-1학기

국가장학 1,2유형 2차 신청 안내



2022-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1,2) 2차 통합신청 및 지급 안내

I. 국가장학 주요 개편 안내

2018학년도부터 국가장학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확대(2022-1부터 시행)

(5~8구간) 5~6구간 368→390만 원, 7구간 120→350만 원, 8구간 67.5→ 350만 원
 (기초·차상위) 520만 원→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450~520만 원→등록금 전액

■ 제도개선 사항 안내(2018년부터 ~)

- 기초/차상위 - 성적평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 장애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제한 폐지
- 0학점 경고제 대상 - 0~2분위에서 1 ~ 3분위로 하향
- 2018-1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2019-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기회 확대**(기존 1회 → 2회로 증가)
- 2019-2학기부터 다자녀장학금의 연령 제한 폐지('88년 이후 출생자 → 나이제한 폐지)

II. 유의사항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1.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 단계에서 **재단거절**로 탈락됩니다. 단, 재학생 중 최대 **2회**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을 허용합니다.(2회의 구제기회 소진 시 탈락)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학생은 최종심사 거절

1차 신청 대상자	비고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신청 시 탈락됨)

2. 신고대상자는 재학생 중 ①재외국민 특별전형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2022학년도 신입생도 적용)
3. 신고대상자는 국외 소득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외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문 필독
 재외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FAQ 필독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특히 교내 가계곤란 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학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
 - 특히, **가계곤란교내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장학)**은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
 - ※ 성적미달 및 등록횟수 초과로 국가장학 선발이 안되더라도 소득분위는 **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선발에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

교내 전액장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1.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장학규정에 의거 교내전액장학생(신입학, 한양브레인 등)이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국가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을 지급합니다.

예) 국가장학 2,600,000원 + 공과대학 신입학장학 4,630,000원(전액)
 ☞ 국가장학 2,600,000원 + 2,030,000원(신입학장학)

- ※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필독 [바로가기](#)
- ※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독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Ⅲ. 국가장학 주요 일정

1. 신청기간 : 2022. 2. 3.(목) ~ 2022. 3. 16.(수) 18시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2. 2. 3.(목) ~ 2022. 3. 18.(금) 18시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Ⅳ. 국가장학 1,2유형 통합 신청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2. 2022-1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구제신청자에 한함)
 -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 신청제외자 : 2022-1학기 휴학예정자(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팀 연락)
 - 2022-1학기 무등록 복학생 중 휴학학기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이중수혜 선정불가)

V. 국가장학 1,2유형 선발 최저 기준(1,2유형 공통)

- ※ 국가장학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하여야만 선발이 됩니다.
 - 1.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백분위 B학점(80점) 이상(이수평점 2.75, F학점, 재수강실패과목 포함)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 성적으로 반영됨.
 - B학점(80점) 미만 ~ C학점(70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70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 교내 사랑의실천 장학 대상자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함.

VI. 장학금 지급방법

1.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자

- 가. 등록금 고지서발급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 나. 등록금 납부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 다. 분할납부 완납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2. 장학금 환불 대상자 :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등록금 납부 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
- 나. 무등록 복학자가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경우

3. 환불 방법

- 가. 학교 포털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

※ 장학금 환불 계좌 : HY-IN 장학환불계좌(환불계좌 등록방법 : HYIN->신청-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

단,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하며
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 이중수혜로 2유형 또는
다음 학기 국가 장학 미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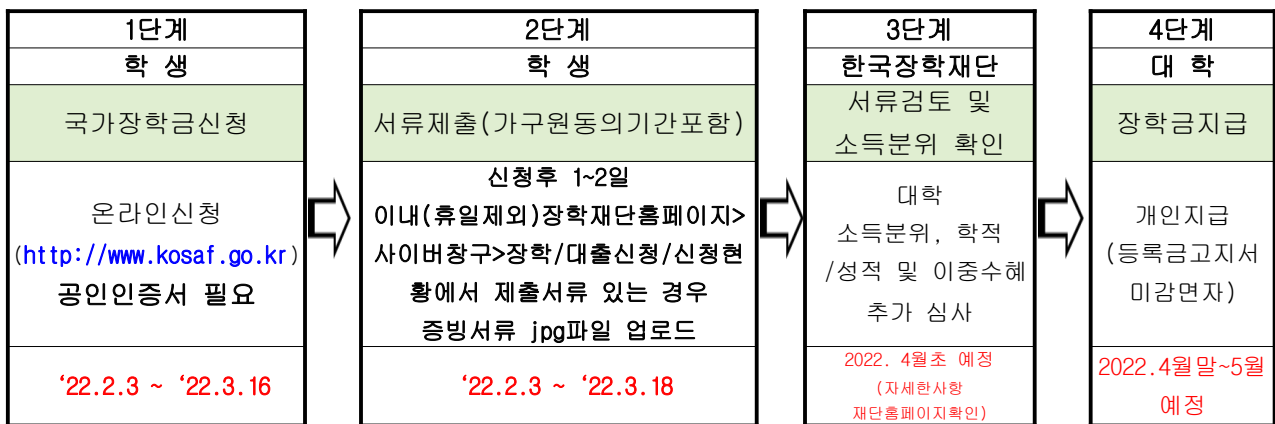
- 나. 지급제외 :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 이하,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제외

VII. 이중지원 방지 준수 의무

- 가.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 할 것

VIII. 국가장학 신청 및 지급 절차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매뉴얼 참고



IX. 신청 오류 사례

국가장학금(1·2유형)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정리

CASE 1. 타인 명의로 신청

-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시 오기로 인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CASE 2. 소속대학을 잘못 입력

-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으로 장학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CASE 3. 부정확한 학적 입력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21년 1학기 편입생이' 22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재학생**"으로 신청
- '21년 1학기 신입생이' 22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재학생**"으로 신청
- ☞ '21년도 1학기 재입학생만' 재입학 "으로 신청하고 이외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CASE 4. 다자녀 우대를 못받는 경우

- 학생기준 미혼/기혼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CASE 5. 서류 미제출

-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22.3.18(금)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CASE 6.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

- 신청완료 후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서류제출일('22.3.18(금) 18시까지) 가구원동의(부모님 각각 또는 배우자)를 완료하여야 장학금 소득분위 확정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1학기 ~ 2021-2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 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 가상계좌 채번(생성) 후 대출상환
(오프라인 상환 방법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